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1093
등록일자	2015.5.29.
결재일자	2015.5.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정동환	변기옥	최주학	배경섭	주윤중	05/29 신연희
협조자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계획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위탁기간** : 2015. 7. 1 ~ 2018. 6. 30(3년간)
- 위탁업체**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 위탁계약 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연장)

※ 관련근거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제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업체 선정 절차**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5. 6. 10(수)까지
- 협약체결 : 2015. 6. 25(목) 예정

강 남 구  
(도 시 계 획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li> <li>·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38조</li> <li>·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4조</li> <li>·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li> </ul>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위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업체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체결</li> </ul>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li> </ul>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강남구 주민      · 수혜범위 : 강남구 전역</li> </ul>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 O )</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 )</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td> <td>( )</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 )</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 )</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 )</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 O )</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 )</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 )</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①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25개 자치구 해당</li> </ul>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항없음</li> </ul>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계획

- 옥외광고물의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 점검 위탁계약」이 종료(2015. 6. 30까지) 됨에 따라,
- 「광고물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구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및 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I 위탁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안전점검대상 광고물 등)
-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II 현재 위탁현황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점검대상**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위탁업체명**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5(논현동 242-30) 소천빌딩 502호]
- **안전점검 실적**(2012. 7. 1 ~ 2015. 4. 30)

종류별	계	돌출	가로	옥상	기타	비고
건수	2,480	1,510	356	566	48	

### III

##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위탁기간** : 2015. 7. 1 ~ 2018. 6. 30(3년간)
- **점검대상**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법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함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안전점검 수수료**(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2)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2

2. 법 제9조1항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4

### IV

## 위탁자격 및 시설 기준

- **위탁지정 신청자의 자격요건**(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 위탁지정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격기준

◇ 시설 : 사무실

◇ 검사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비

- 3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광고물의 안전점검 검사용 작업차량
- 광고물의 규격 측정 및 내력·부식·접합·고정상태 점검용 장비
- 구조물의 앵커위치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구조 균열 진행사항 점검용 장비 각 1개이상
- 광고물의 응급조치용 공구 및 전기절연상태 점검용 장비
- 기타 사다리, 카메라, 망원경과 검사원 개인보호 장구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 V 위탁업체 선정

### □ 위탁절차(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① ⑤ ⑥)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제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위탁기간** : 2015. 7. 1 ~2018. 6. 30(3년)

### □ **위탁업체 선정**

◇ 위탁업체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5(논현동 242-30) 소천빌딩 502호

◇ 선정 사유

- 관련법규 적법한 비영리법인으로 안전점검 및 장비, 인원 등 요건 구비하여 중전 위탁기간 중 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서울시 및 자치구와 옥외광고업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이상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어 선정가능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① ⑤)
- 따라서 별도의 선정절차는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를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광고물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탁계약 방법 : 협약에 의한 계약

◇ 신청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 업체(단체) 현황
- 안전점검 위탁업무 수행실적
- 인력 및 기술 자격현황
- 장비보유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신청기한 : 2015. 6. 10(수)까지

□ **위탁업체 협약 체결**

- ◇ 위탁업체 대상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
- ◇ 협약일자 : 2015. 6. 25(금) 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 협약서 체결내용
  - 목적 및 위탁기간
  - 위탁업체 및 조건

- 대상광고물 및 수수료
- 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 준수사항 및 협약의 해지
- 민.형사상 책무 및 조문서 해석
- 계약서의 보관 등

## V

## 행정사항

- 위탁업체의 신청서류를 제출 받아 승인 후 협약체결
- 위탁업체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고시

첨부 : 1. 위탁업체 신청서류(①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②업체(단체) 현황 ③안전점검 위탁업무 수행실적 ④인력 및 기술 자격현황 ⑤장비보유 현황)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

< 첨부 1-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강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 1-② >

**업 체(단체)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평수기재		
5. 연 락 처	☎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회사소개(요약)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자격요건을 취득한 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 첨부 1-③ >

## 안전점검 위탁 업무 수행실적

- 총 건 수 :            건
- 수행내역 (2012년 7월 1일 이후)

사 업 명	위 탁 자	위탁수행기간	단독/공동 수행	비 고

- 수행계약서 사본 첨부

< 첨부 1-④ >

##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

순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술(소유)자격증	담당업무	비고

-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 자격증 확인을 위한 관련자격증 사본 첨부

< 첨부 1-⑤ >

## 장비보유 현황

### ○ 차량 등

순번	차종	용도	인승(톤)	등록(신고)일자	비고(소유자)

-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첨부

### ○ 기타 안전점검 장비 등

순번	품명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비고(소유자)

- 장비현황사진 첨부

< 첨부 2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갑” 이라 칭하고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장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후 최대 60일까지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업체 및 조건)

- ① 위탁자 “갑”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수탁자 “을”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장
- ② 위탁업무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 ③ 위탁조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관련 법령준수

제4조(대상광고물 및 수수료)

- ①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광고물
  - 2.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광고물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검사 요구한 광고물

②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7조(수수료) 별표4으로 정한다.

#### 제5조(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 ① “을”은 안전점검 신청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되었거나 당해 구청으로부터 안전점검 의뢰를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안전점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월의 안전점검 실적을 익월 10일전까지 안전점검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시정·보완할 사항을 통지하여 시정·보완 후 재검사 신청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 ① “을”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

고물 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점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 등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② “을”은 본 협약 당사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없다.

####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갑”은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협약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때

3.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4.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였을 때

제8조(조문의 해석)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예규 등에 따르며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1통씩 소지한다.

- 붙임 :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강남구 조례 별표4)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별지6호 서식)  
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황(별지7호 서식). 끝.

2015. 6. .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

“을”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장 송 시 현 (인)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제15조제4호)및 높이 10m이상의 가로형간판(영제15조제2호, 제3호)	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22,000	
	개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45,000	
	m <sup>2</sup>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3,000	
		·연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가. 옥상간판	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2,000
m <sup>2</sup>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나.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제15조제4호),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영제15조제2호, 제3호)	개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22,000	
	m <sup>2</sup>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2,000	
	m <sup>2</sup>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22,000	
	m <sup>2</sup>	·연면적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4. 현수막게시시설	개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2,000
	개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45,000
	m <sup>2</sup>	·연면적 8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5. 그 밖의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 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2)~(6)를 준용한다.
-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항목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 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 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210mm×297mm 복사용지 75g/m<sup>2</sup>